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準據法으로서의 UCP 500과 ISP98의 比較研究*

박 석 재**

-
- I. 서론
 - II. 스탠드바이 신용장 준거규범으로서의 UCP 500에 대한 평가
 - III. 스탠드바이 신용장 준거규범으로서의 ISP98에 대한 평가
 - IV. 결론
-

I. 序 論

스탠드바이 신용장¹⁾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자가 환어음과 불이행 진술서를 개설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지급의 보장을 받는 결제 수단이다. 동 신용장은 미국²⁾을 중심으로 그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³⁾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3-C00313)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부교수

- 1) standby letter of credit은 국내에서는 주로 보증신용장이라 번역되고 있지만, 보증이라는 말은 신용장의 독립성과 상반되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어 그대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미국 은행들의 2002년 4/4분기 현재 화환신용장의 개설액은 미화 218억 달러이며,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개설액은 미화 2천 642억 달러에 달하여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개설액이 화환신용장의 개설액보다 약 12배 정도 더 개설되고 있다.(Anonymous, “Statistic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7, No.3, 2003. 3, pp.36~41.) 또한 미국 외 국가들의 미국 직접 통계를 살펴보면 2002년 4/4분기 현재 화환신용장의 개설액은 미화 136억 달러이며,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개설액은 미화 1천 331억 달러에 달하여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개설액이 화환신용장의 개설액보다 약 10배 정도 더 개설되고 있다.(Anonymous, “Statistic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7, No.4, 2003. 4, pp.35~39.)
- 3) 전세계적인 스탠드바이 신용장 사용 현황에 대한 최근의 자료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19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미화 7천 750억 달러에 달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과거부터 신용장통일규칙(UCP)의 지배를 받아 왔지만 UCP는 주로 물품매매에서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을 규율하기 위한 규칙인 관계로 이를 스탠드바이 신용장 거래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발상지인 미국의 은행업계의 요망을 기초로 하여 표준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실무관행을 규정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SP98)이 199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통일규칙은 독특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은행, 무역회사, 제조업체 등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동 통일규칙을 충분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그렇지만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채무자의 불이행이 없다면 사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의 준거규범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미국의 회사들과 관련하여 한국의 당사자들이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⁴⁾ 앞으로 소송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범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UCP 500과 ISP98 양 규칙 중 어느 규칙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범으로서 더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스탠드바이 신용장 거래시 UCP 500을 사용하는 경우와 ISP98을 사용하는 경우의 장단점과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지적하고,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준거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관련한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취하기로 한다.

다는 것이다.(Anonymous, "Update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2, No.5, 1998. 5, p.3.)

4) Affidavi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Regarding Standby LCs, *Nissho Iwai Europe PLC v. Korea First Bank* No.600891/2000(N.Y. Sup. Ct. 27 October 2000).

II. 스탠드바이 信用狀 準據規範으로서의 UCP 500에 대한 評價

1. 長點

(1) 一般的인 使用

현재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이하 UCP 또는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함)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준거규범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신용장통일규칙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처음으로 선언된 것은 1977년이다. 즉,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1977년 3월 17일에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신용장통일규칙 1974년 개정판 총칙 및 정의의 (b)항하에서 화환신용장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신용장통일규칙하의 화환신용장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또는 보증서로서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언명을 은행위원회에게 요구한 인도의 외환거래업자 협회(Foreign Exchange Dealers Association of India : FEDAI)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여 이루어졌다.⁵⁾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⁶⁾ 실무계에서는 부적합한 규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UCP를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범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1962년 개정안인 UCP 222, 1974년 개정안인 UCP 290이 사용되던 시기에도 역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UCP를 준거규범으로 사용하고 있었다.⁷⁾

5) ICC, *Decisions(1975-19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1980, p.11.

6) UNCITRAL,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Guarantee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A/CN.9/301)*, para.51.

7)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즉,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를 바탕으로 사회간접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이전에는 국제사회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준거규범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UCP가 어떤 나라의 법제에 속하는 법률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행들의 집대성이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현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UCP 상의 개별조항들을 변경 또는 적용배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약정에도 UCP의 적용을 합의함으로써 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⁸⁾

신용장통일규칙은 마침내 1983년 개정(ICC Publication No. 400) 이후 명확하게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⁹⁾ 1993년 개정인 UCP 500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84년 이후 공식적으로 UCP를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범으로 인정 및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7월 현재 신용장의 준거규범으로서 신용장통일규칙을 국가 베이스로(collective adherence)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44개국¹⁰⁾이며, 개별 은행 단위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76개국에 이르러, 무려 120개국이 신용장통일규칙을 신용장 거래의 준거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¹¹⁾

이와 같이 UCP는 수십년간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신용장의 준거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범으로서 UCP의 장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簡潔하고 平易한 表現

신용장통일규칙은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인 수출상, 수입상, 은행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다.¹²⁾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변호사, 법학 전공 대학교수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은행업자, 무역전문가들이 두루 작업에 참여한 결과로 여겨진다.

8) 金榮勳, “스탠드바이 信用狀統一規則(ISP98)과 貨換信用狀統一規則(UCP500)과의 比較研究”, 『貿易商務研究』, 제13권, 2000. 2, pp.659~660.

9) UCP 400 제1조에 따르면 본 규칙은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포함한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44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조레스 제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인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레바논,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테이라 제도, 말타, 네덜란드, 파나마,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이다. 한국은 1995년 4월 이후 신용장통일규칙을 준거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1) <http://www.iccwbo.org/home/banking/778rev9.asp>

12) 박석재, “ISP98과 UCP500의 비교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4호, 2002. 2, p.300.

또한 제정 초기에 그 사용주체를 신용장거래에 친숙한 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도 생각되는데, 이는 많은 원칙들이 기술되지 않았거나 또는 명료하게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은 법률, 무역실무 지식을 깊게 연구하지 못한 일반 무역업자, 은행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은 무역업자, 은행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만일 변호사, 대학교수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어려운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신용장거래의 전세계적인 준거규범으로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2. 短點

(1) 適用規定의 不確實性

스탠드바이 신용장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지금까지 주로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런데 동 규칙은 본질적으로 물품과 서비스 매매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 거래를 위한 것이어서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상황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과 쟁송을 초래하였다.¹⁴⁾

물론, 신용장통일규칙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獨立性和 서류의 성질을 강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규칙은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포함한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조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전적으로 적용가능하지는 않다.¹⁵⁾

즉, 신용장통일규칙의 어느 조항들이 사실상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가능

13) 金榮勳, 전제논문, p.663.

14) 李忠烈, “保證信用狀規則의 特性에 관한 研究”, 『貿易商務研究』, 제14권, 2000. 8, p.258.

15) 대한상공회의소 ICC한국위원회, 『스탠드-바이 신용장 통일규칙』, 대한상공회의소, 1999, 9면.

하고, 만일 동 조항들이 적용가능하다면 또한 어느 정도까지 적용가능함을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규칙이나 지침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¹⁶⁾ 따라서 그 적용가능성의 문제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문제가 될 때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남게 된다.¹⁷⁾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CP 500의 일부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부적당하다. 따라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용장을 UCP에 지배되도록 만들고 동시에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어떤 특정의 예외를 명기하여야 한다.¹⁸⁾ 국제금융서비스협회의 Dan Taylor 회장은 “대부분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UCP 규정을 변경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UCP 규정의 50%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 불가능하고 나머지 25%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많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UCP에 따라서 발행되었음에도 UCP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때로는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화환신용장에 비해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¹⁹⁾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개별 신용장들의 특별한 제조건을 모르고서 어느 조항들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가능하고 또한 어느 조항들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불가능한지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적용은 전적으로 개개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성질에 의존한다.”라고 진술하면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범으로 삼는 데에는 적용규정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2) 適用不可 規定들의 存在

16) 모든 신용장에 공통하는 조항인 총칙과 정의,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가능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적용이 불확실하다.

17) UNCITRAL(A/CN.9/301), op. cit., para.53.

18) B. Wunnicke and D.B. Wunnicke, “How should UCP 500 be modified for standby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1, No.4, Autumn 1995, p.11.

19) D. Biederman, “Shippers: Standby for ISP98”, *Traffic World*, Vol.257, 1999, p.17. ; 李忠烈, 전계논문, p.266.

20)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91, Case 168(Revocability of a standby letter of credit), p.14. Todd 교수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P. Todd,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p.240.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종종 UCP에 지배되어 발행되지만, UCP의 초점은 화환신용장에 모아지며 그 결과 UCP의 많은 규정들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부적당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불가항력 조항

UCP 500 제17조는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모든 동맹파업, 직장폐쇄에 의하여 은행업무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수권되지 않은 한,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업무중단 동안에 만기된 신용장에 따라 지급, 연지급 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ISP 98 Rule 3.14에 따르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기재된 제시장소가 제시의 최종영업일에 전쟁, 폭동, 파업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폐쇄되어 있으며 그 폐쇄 때문에 적시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제시의 최종일은 제시장소의 영업재개일후 30일(三十日) (thirty calendar days)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UCP하의 결과와 정반대이다. 제시를 위한 최종영업일에 개설인 폐쇄의 위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대부분의 스탠드바이 신용장 수익자로서는 이 UCP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안식이 높고 총명한 수익자들은 이 UCP 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것이다.²¹⁾

② 할부선적/어음발행 조항

UCP 500 제41조는 “신용장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할부방식에 의한 어음발행 및/또는 선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할부분이 그 할부분을 위하여 허용된 기간내에 어음발행 및/또는 선적되지 아니하였다면,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회의 지급제시를 1년간 행하는 할부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21) J.E. Byrne, *ISP98 & UCP500 Compare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0, p.87.

신용장의 경우, UCP 500 제41조에 따르는 신용장에서는 어느 한 지급제시를 태만히 하는 것에 의하여 후속하는 지급제시가 봉쇄되어 결국 그 신용장은 사용불능이 된다. 반면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수익자는 할부분의 어떤 한 청구의 만기가 지난 경우에만 비로소 지급청구를 원한다. 만일 개설의뢰인이 분할불로 할부분을 지급한다면, 그 이후의 할부 지급을 보장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위하여 중지되지 않아야 한다.²²⁾

반면 ISP98 Rule 3.07은 분할 지급청구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 제시가 행해질 수 있으며, 일련의 지급청구 중 한 청구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나중의 지급청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각각의 제시가 개별적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ISP98에 준거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서는 전기와 같은 할부지급의 경우 각각의 제시가 개별성을 가지는 결과, 어느 한 지급제시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그것이 다음 회의 적시의 제시(또는 적시의 재 제시)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UCP의 규정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실무에 반한다고 하여 ISP98이 의식적으로 UCP의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²³⁾ 따라서 UCP 500을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범으로 삼는 경우에는 UCP 500 제41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③ 지체 선하증권의 처리규정

UCP 500 제43조는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선적일 이후부터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일치한 제시를 행하여야 할 특정한 기간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간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선적일 이후부터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종종 물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그 선적이 개설의뢰인에게 행해졌음을 나타내는 선적서류 또는 운송서류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²⁴⁾

동 조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선적후 21일 이상 경과하여 제출된 운송서류를 수리하지 않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화환신용장의 경우 운송서

22) B. Wunnicke and D.B. Wunnicke, op. cit., p.12.

23) 飯田勝人, “獨特の規定を盛り込んだスタンバイ信用狀統一規則(ISP98)の實施と實務への影響”, 『金融法務事情』, No.1541, 1999.3.15, p.27.

24) B. Wunnicke and D.B. Wunnicke, op. cit., p.12.

류가 늦게 제출되면 창고료, 체선료 등이 발생하여 관계 당사자간 분쟁 발생을 염려한 규정이지만,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경우에는 운송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틀림없이 선적이 행해진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선적후 며칠이 경과하였는가는 통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²⁵⁾

즉, 이 조항은 기한경과 서류에 대해 화환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수익자들은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의해 제출된 대금청구서류는 개설의뢰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기한이 경과되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UCP 500을 준거규범으로 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UCP 500 제43조의 적용이 삭제되거나 또는 선적일 후 21일 이상 후에 제시된 서류가 수리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보통 이러한 21일 규칙을 우회하여 변경되어야 한다.

(3) 未規定 問題들의 存在

화환신용장은 선적이 이루어진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지급받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의 내용은 운송서류, 각종 증명서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서류 및 선적이행에 따른 각종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이 어떤 사실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입증하는 불이행진술서를 제시하여 지급을 받기 때문에 불이행 사실들을 입증하는데 따른 제반 규정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서류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²⁷⁾

또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첫째, 연장 또는 지급청구가 심사 및 불일치의 통지를 요하는 서류의 제시로서 간주되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서류에 포함된 진술서의 진정성의 표시를 요구할 때 요식, 인증 및 확인 등 무엇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다. 셋째, 양도불능 스탠

25) 新堀 聰, “スタンバイ信用狀(1)”, 『國際金融』, 제1075호, 2001. 11, p.60.

26) 李忠烈, 전제논문, p.276.

27) 김선광, “보증신용장에 관한 규칙제정과 관련한 제언”, 『경남대 산업경영』, 제17권, 1994. 12, p.251.

드바이 신용장의 지정된 수익자에 대한 법적인 승계인이 지정된 수익자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어음의 발행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²⁸⁾ 뿐만 아니라 역 스탠드바이 신용장, 단순요구불 스탠드바이 신용장, 신디케이션 및 하위 참가(sub-participation) 등의 문제도 UCP 500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²⁹⁾

Ⅲ. 스탠드바이 信用狀 準據規範으로서의 ISP 98에 대한 評價

1. 長點

(1) 最初の 스탠드바이 信用狀 關聯 專門規則

1998년 4월 6일 ICC의 봄 회합에서 ICC 은행기술 실무위원회는 스탠드바이 신용장 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이하 ISP98이라 함)을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준거규범으로서 승인하였다.³⁰⁾ 작업부의 대표단 및 은행위원회의 임원들은 다음의 결론 및 권고에 이르렀다. 첫째,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위한 별개의 특정한 규칙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둘째, 우리의 최근의 회합을 고려하여 개정된 ISP98은 충분히 스탠드바이 신용장 관행을 반영하고 있으며,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다른 규칙들과 완전히 조화되며, 스탠드바이 신용장 사회의 널리 퍼진 지지를 끌 수 있다.³¹⁾ 이와 같이 국제상업회의소가 ISP98을 승인한 것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에는 UCP 500보다는 오히려 ISP98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무역업자, 은행가 및 변호사는 전문적으로 스탠드바이

28) J.E. Byrne, "Spotlight on standby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2, Spring 1997, pp.13~14.

29) G. Affaki, "How do the ISP standby rules fit in with other uniform rul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5, No.1, Winter 1999, p.3.

30) Anonymous, "UPDATE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2, No.5, 1998. 5, p.3.

31) Anonymous, "Adoption of the draft ISP Rule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2, No.5, 1998. 5, p.7.

신용장을 다루는 첫 번째 규칙인 ISP98을 사용 가능하다. 매우 많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이미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ISP98에 준거하여 발행되고 있다. 국제 은행업계는 그들 고객으로부터 ISP98에 준거한 확약을 발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점점 느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³²⁾

신용장통일규칙이 주로 화환신용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스탠드바이 신용장도 적용범위로 하여 신용장 일반에 관한 통일규칙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ISP98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실무관행에 특유한 사항으로 대상을 좁히며, 이것과 모순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변경하고 있는 이외 표준 스탠드바이 신용장 실무를 반영하고 있으며 독자의 용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³³⁾

ISP98은 스탠드바이 신용장 관행을 반영하고 있으며,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세계적인 성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규정이 기술되어 있다.³⁴⁾ ISP98의 관련 당사자는 은행가 및 상인들뿐만 아니라 스탠드바이 신용장 법률 및 관행과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당사자들³⁵⁾에게 까지 미치기 때문에 ISP98은 양식 및 접근에 있어서 UCP와 다르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종종 분쟁 또는 지급 불능의 경우에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의도되기 때문에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본문은 화환신용장의 본문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정교하게 작성된다. 그 결과 ISP98은 또한 스탠드바이 신용장 관행의 해석에 있어서 변호사 및 판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³⁶⁾

(2) 關聯 當事者의 ISP98 使用의 肯定的 效果

① 開設銀行 側의 肯定的 效果

a. 불일치사항의 통보 지체 위험의 감소

ISP98 Rule 5.01에 따르면 개설은행은 서류를 심사한 후 서류가 수령된 익

32) G. Affaki, op. cit., p.20.

33) 飯田勝人, 전계논문, p.24.

34) 대한상공회의소 ICC한국위원회, 전계서, p.9.

35) 예를 들면 신용도 평가기관, 회사 회계담당자 및 신용관리자, 정부 관리, 광범한 종류의 규제자 및 이용자들의 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정교한 이용자들의 무리를 들 수 있다.

36) 대한상공회의소 ICC한국위원회, 전계서, pp.11~13.

일 후 최소한 3 영업일³⁷⁾과 최대 7영업일 내에 불일치 통보를 행하여야 한다. 3일의 통보기간은 개설은행이 불일치 통보를 지체함으로써 추후 지급거절에 대한 근거로서 불일치를 주장하는 것이 배제된다는 주장(preclusion rule)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3일 통보 규칙은 그것만으로도 일부 은행들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보다 ISP98을 더 선호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³⁸⁾

b. 서류의 처분 관련 책임의 경감

개설은행은 거절된 서류를 제출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제출자의 처분으로 그 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비록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로의 적시의 통보에서 그 불일치를 주장하였을 지라도 그 서류들에서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것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 페널티의 엄격한 적용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가혹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ISP98 Rule 5.07은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제출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지시받은 바와 같이” 거절된 서류들을 처분할 의무를 지우지만, 지급거절에 대한 통보에서 그 서류들의 처분에 관하여 통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서류의 불일치에 대하여 적시의 통보를 행한 항변을 포함하여 다른 경우라면 이용가능한 항변을 개설은행이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³⁹⁾

② 受益者 側의 肯定的 效果

a. 부적당한 신용장통일규칙 조항의 제외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 조항중 제17조(불가항력 조항), 제41조(할부선적 조항), 제43조 (a)항(지체 선하증권 관련 조항)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규정들이다. ISP98은 위의 신용장통일규칙 조항에 의하여 수익자가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여 준다.

b. 배제규칙의 명료성

개설은행 “배제규칙”(preclusion rule)의 명료성이 수익자에게는 또 다른 이익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류 수령후 3 영업일은 불합리한 기간이 아니라

37) 이 기간을 ISP98에서는 “안전한 피난처”(safe harbour)라고 기술하고 있다.

38) P. Turner, “Paul Turner offers his views on the pluses(and minuses) of using ISP98”,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6, No.4, Autumn 2000, p.11.

39) P. Turner, *op. cit.*, p.11.

고 간주되며, 7일 이상은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만일 은행이 제시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하거나 또는 허용된 기간 이내에 불일치를 명시하지 못한다면, 은행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불일치를 주장하거나 제시를 지급거절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배제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보다 ISP98에서 훨씬 더 명료하게 진술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개설은행이 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7일 기간의 만료 바로 이전까지 기다리는 것을 허용하여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③ 開設依頼인 側の 肯定的 效果

개설의뢰인의 관점에서 개설의뢰인이 ISP98에 지배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요청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개설의뢰인은 신용장통일규칙보다 ISP98을 선호하는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서 ISP98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2. 短點

(1) 過度한 詳細

ISP98은 보통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시도하는 평이하고 간결한 방식이 아니라 그 규칙이 매우 복잡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⁴¹⁾ 신용장 통일규칙은 제7절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ISP98은 제10절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항도 A or B 등의 용어의 해설까지 포함하는 지극히 상세한 방식이다.⁴²⁾

신용장 통일규칙은 비법률가들이 규칙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상업회의소의 방침 때문에 가능한 한 평이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ISP98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무역업자 및 은행업자⁴³⁾들이 이용하기에는 난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⁴⁴⁾ 따라서 개설은행, 수익자

40) P. Turner, op. cit., p.11.

41) J.P. Mattout, "Jean-Pierre Mattout on injunctions, the draft standby rules and first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3, Summer 1997, p.12.

42) 新堀 聰, "スタンバイ信用狀(2)", 『國際金融』, 제1077호, 2001.12, p.63.

또는 개설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관계당사자가 이 규칙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규칙에 준거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취급하는 것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다. ISP98의 다수 세부조항은 사실상 예측불가능하거나 특이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규정되어 있다.⁴⁵⁾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전문 규칙으로서 종래 은행실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모두 커버하려고 한 열의는 이해되지만, 의문점은 계속하여 새로이 발생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이러한 국제 규칙은 원칙만을 간결히 규정하고 상세는 상관습의 발전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사용자측의 대표가 기초에 참여하였다면 당연히 지적되었을 것이다.⁴⁶⁾ 규칙의 상세함이 지나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ISP98처럼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한다면 분명히 예정된 위험이 존재한다. 즉, 규칙의 상세함은 거래당사자를 구속적인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2) 制限的 使用

ISP98을 반대하는 견해를 보면 동 규칙에 대한 필요성이 세계 도처에서 동일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특정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필요성이 실제적이지만,⁴⁷⁾ 당분간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규칙의 유용성에 대하여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⁴⁸⁾ 2001년 Dublin 신용장 회의에서 시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중에서 ISP98에 준거하여 개설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비율은 10%에서 98%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은행에 의하면 그들이 개설한 스탠드바이 신용장 중 고작 3% 이하가

43) ISP98 규칙의 과도한 조항은 UCP 500, URR 525, URCB 524, URDG 458, URCG 325 등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관련한 각종 규칙의 조문을 알아야 하는 은행원들에게 추가적인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M. Doyle, "ISP98 : A Recipe for Disaster", *Letter of Credit Update*, Vol.15, No.3, 1999. 3, p.15를 참조하기 바란다.

44) 朴錫在, "국제 신용장 거래에 관한 ISP98", 『상사법연구』, 제19권 2호, 2000. 10, p.709.

45) J.F. Dolan, "Analyzing Bank Drafted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ISP98)", *Wayne Law Review*, Vol.45, Winter 2000, p.1873.

46) 新堀 聰, 전제 주 42, p.63.

47) 미국은 과거 은행이 보증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고안하여 이를 활발히 사용하여 왔다.

48) J.P. Mattout, op. cit., p.12.

ISP98에 준거되었다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동 규칙은 지역적 한계성을 지닌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ISP98의 제정작업에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사용자인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측이 참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UCP 500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⁵⁰⁾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ISP98의 사용을 꺼리는 까닭에 ISP98의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ISP98은 미국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편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 아시아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은행 관계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ISP98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현재 ISP98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한 이유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은행원들이 신용장통일규칙에 보다 익숙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컨대 앞으로 ISP98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3) 關聯 當事者의 ISP98 使用의 否定的 效果

① 開設銀行 側의 否定的 效果

개설은행의 관점에서 ISP98의 이용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으며, 전혀 손해가 없다. 이는 ISP98의 제정 초기부터 개설의뢰인, 수익자 등 사용자들이 배제되고 은행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은행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② 受益者 側의 否定的 效果

a. 제출서류의 鏡像 原則(mirror image rule) 적용으로 인한 지급거절 가능성
ISP98 Rule 4.09 c에 따르면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인용부, block 식 자체의 문언, 첨부표 또는 서식 등을 이용하여 특정의 문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

49) Anonymous, "ISP98 Usage Poll Result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5, No.5, 2001. 5, p.5.

50) 新堀 聰, 전계 주 42, p.61.

에 특정의 문언은 “엄밀(exact)” 또는 “동일(identical)”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자, 구두점, 간격 등의 오식 및 데이터의 공백행 또는 여백을 포함하여 제출서류의 문언은 엄격히 재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문언이 鏡像과 같이 재현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수익자는 분명히 불합리하다.⁵¹⁾ 따라서 수익자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엄밀” 또는 “동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혹은 ISP98 Rule 4.09 c 그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b. 조건위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의 상실 가능성

ISP98 Rule 5.06 c(i)에 따르면 개설은행 이외의 서류 심사자로부터 지급거절의 통지를 받은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위하여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보내는 일, 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의 통지를 받은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권리의 포기를 구하는 것을 의뢰한 경우 이 의뢰가 실행된 때는 수익자는 서류가 조건에 위반하고 있는 취지의 개설은행의 통지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의 상거래의 경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비록 개설은행이 조건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개설의뢰인에게 연락한다면 지급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에 의한 서류의 송부 또는 권리포기의 의뢰가 실행된다면 조건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되며, 조건위반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은 수익자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수익자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개설에 앞서서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⁵²⁾

③ 開設依頼인 側의 否定的 效果

a. 소송제기 시효기간의 단축 효과

ISP98 Rule 5.09 c에서는 서류를 수령한 후 신속한 수단으로 잘못된 지급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개설의뢰인은 잘못된 지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설의뢰인으로서의 지극히 불합

51) P. Turner, op. cit., p.12 ; 新堀 聰, 전계 주 42, p.63 ; J.F. Dolan, op. cit., p.1890.

52) P. Turner, op. cit., p.12 ; 新堀 聰, 전계 주 42, pp.63~64. ; J.F. Dolan, op. cit., pp.1896~1897.

리한 규정이다. 개설은행은 조건위반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개설의뢰인이 신속히 이의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조건과 상위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지급을 행하더라도 후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른 바 배제의 원칙을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 규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각국의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출소기한 또는 시효기간의 단축이다. 이 기간은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에서는 1년간이며,⁵³⁾ 다른 제국에서는 3~4년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문제는 “신속한 수단으로”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가이지만, ISP98에는 확실한 규정은 없지만, ISP98의 공식주석에 의하면 ISP98 Rule 5.01에서 개설은행에 의한 지급거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장 7일이라는 기간이 이 규칙의 적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⁵⁴⁾ 미국에서도 1년간의 출소기한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1주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 개설계약에 있어서 ISP98 Rule 5.09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⁵⁵⁾

b. 서류제출과 관련한 위험 및 비용 부담의 증가

ISP98은 Rule 8.01(b)와 Rule 8.02(a)에서 개설의뢰인은 다른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떠맡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할당된 신용장 거래의 비용을 지급하여야만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Rule 8.01(a)(ii)와 Rule 4.13(a)에서 그 신용장하에서 서류를 제시하는 사기적인 불법행위자의 위험은 개설의뢰인이 부담하여야만 함을 분명히 한다.

ISP98 Rule 4.13(a)하에서 은행은 서류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른 경우라면 은행은 서류를 수령할 때에 주의의 표준 또는 다른 행위의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 만일 제출자가 진정한 수익자가 아니고 진정한 수익자가 뒤에 적시의 일치하는 제시를 행한다면, 개설인은 두 번째 제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개설의뢰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설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UCP 500은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 언급이 없다.⁵⁶⁾

53) UCC §5-115.

54) J.E. Byrne,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1998, p.228.

55) P. Turner, op. cit., p.12 ; 新堀 聰, 전계 주 42, p.64 ; J.F. Dolan, op. cit., pp.1897~1899.

56) P. Turner, op. cit., p.12.

IV. 結論

신용장 통일규칙이 현재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관련한 준거 규범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동 규칙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합해서라기 보다는 동 규칙이 국제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기존에 존재한 규칙 중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규율할 만한 규칙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즉, 기존의 신용장 통일규칙은 화환신용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이므로 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즉, 신용장 통일규칙의 많은 조항들 특히 운송서류 관련 조항들, 불가항력, 상환, 할부선적/어음발행 등과 관련한 조항들은 스탠드바이 신용장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 측에서도 ISP98을 승인하면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해서는 ISP98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후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관련해서는 UCP 500의 사용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ISP98을 스탠드바이 신용장 거래의 준거규범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ISP98의 사용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매우 보급되어 있으며, ISP98에 관하여 그들 고객의 교육에 힘쓴 은행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70% 이상이 ISP98에 준거한다는 것이다.⁵⁷⁾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ISP98에 대한 법적 해석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ISP98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스탠드바이 신용장 거래에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사용목적에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한 ISP98의 일부 조항을 적절히 철폐 또는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하에 UCP 500의 일부 조항을 채용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7) J.E. Byrne, "Overview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 2000", *Documentary Credit World*, Vol.5, No.2, 2001.2, p.22.

參考文獻

- 김선광, “보증신용장에 관한 규칙제정과 관련한 제언”, 『경남대 산업경영』, 제 17권, 1994. 12.
- 金榮勳, “스탠드바이 信用狀統一規則(ISP98)과 貨換信用狀統一規則(UCP500)과의 比較研究”, 『貿易商務研究』, 제13권, 2000. 2.
- 대한상공회의소 ICC한국위원회, 『스탠드-바이 신용장 통일규칙』, 대한상공회의소, 1999.
- 박석재, “스탠드바이 신용장 통일규칙(ISP98)의 주요 내용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2. 12.
- _____, “ISP98과 UCP500의 비교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4호, 2002. 2.
- _____, “국제 신용장 거래에 관한 ISP98”, 『상사법연구』, 제19권 2호, 2000. 10.
- 李忠烈, “保證信用狀規則의 特性에 관한 研究”, 『貿易商務研究』, 제14권, 2000. 8.
- 飯田勝人, “獨特の規定を盛り込んだスタンドバイ信用狀統一規則(ISP98)の實施と實務への影響”, 『金融法務事情』, No.1541, 1999. 3.
- 新堀 聰, “スタンドバイ信用狀(1)”, 『國際金融』, 제1075호, 2001. 11.
- _____, “スタンド바이信用狀(2)”, 『國際金融』, 제1077호, 2001. 12.
- Anonymous, “Statistic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7, No.4, 2003. 4.
- _____, “Statistic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7, No.3, 2003. 3.
- _____, “ISP98 Usage Poll Result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5, No.5, 2001. 5.
- _____, “Update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2, No.5, 1998. 5.
- _____, “Adoption of the draft ISP Rule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2, No.5, 1998. 5.
- Biederman, D., “Shippers: Standby for ISP98”, Traffic World, Vol.257, 1999.
- Byrne, J.E., “Overview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 2000”, Documentary Credit World, Vol.5, No.2, 2001. 2.
- _____, ISP98 & UCP500 Compare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0.
- _____,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1998.
- _____, “Spotlight on standby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2, Spring 1997.

Dolan, J.F., "Analyzing Bank Drafted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ISP98)", Wayne Law Review, Vol.45, Winter 2000.

Doyle, M., "ISP98 : A Recipe for Disaster", Letter of Credit Update, Vol.15, No.3, 1999. 3.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91.

——, Decisions(1975-19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1980.

Mattout, J.P., "Jean-Pierre Mattout on injunctions, the draft standby rules and first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3, Summer 1997.

Todd, P.,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Turner, P., "Paul Turner offers his views on the pluses(and minuses) of using ISP98",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6, No.4, Autumn 2000.

UNCITRAL,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Guarantee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A/CN.9/301).

Wunnicke, B., and Wunnicke, D.B., "How should UCP 500 be modified for standby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1, No.4, Autumn 199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UCP 500 and ISP98 as the Governing Law for
Standby Letters of Credit

Park, Seok Jae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standby letters of credit have been used as a surety device, serving as a performance bond and guarantee in the world. UCP has been used a governing rule for standby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But the UCP may be sufficient for certain simple standbys, it is not fully applicable nor appropriate for standbys - as is recognized in UCP 500 Article 1.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provide rules of practice drafted specifically for standby letters of credit intended as an alternative to UCP 500. It became effective on January 1, 1999. In addition to restating general rules applicable to all independent undertakings with greater precision than does UCP 500, thereby reducing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it addresses issues that commonly arise in standby practice not addressed in UCP 500.

UCP 500 is valid and still applies to standby letter of credit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Since ISP98 and UCP 500 coexist and may be applicable to standby letters of credit by incorporation, applicants, beneficiaries and issuers have a choice.

This study will assist all interested parties in establishing the right rules for the right product, for the right standby letters of credit.

Key words : UCP 500, ISP98, Standby Letter of Credit